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재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3729 발의연월일: 2023. 8. 9.

발 의 자:이재정·민병덕·김정호

이성만 • 이학영 • 김병욱

이용빈 • 조정식 • 이수진

인재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20조, 제21조에 교직원의 구분과 임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 현장에서는 유치원 운영을 위한 사무, 교무학사 업무의 담당자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으로만 운영되고 있음.

질 높은 교육을 위해 수업 준비,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음. 한 해 동안 한 교사들이 생산해 낸 공문서의 양은 대략 5천여 건 이상이며, 이를 수업일수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30여 개의 공문들이 매일 교사들이 의해 생성되고 있음.

이와 더불어 출생아수 급감으로 인한 학급감축에 의해 과원된 교사수에 대한 해결책으로 '교무학사전담교사'를 배치하여 학급 담임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, '교무학사전담교사'는 교무학사에 집중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.

이에 유아교육법에 '교무학사전담교사'를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사들이 수업연구,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아이들에게 최상의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유치원에는 교무학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무학사전담교사를 둔다.
- 1. 1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: 1명
- 2.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 유치원: 2명
- 3. 12학급 이상의 유치원: 3명 이상

제21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교무학사전담교사는 학급 담임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학사 업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교직원의 구분) ① (생	제20조(교직원의 구분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유치원에는 교무학사 업무
	를 전담하기 위하여 다음 각
	호의 구분에 따른 교무학사전
	<u>담교사를 둔다.</u>
	<u>1. 1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</u>
	<u>치원: 1명</u>
	<u>2. 6학급 이상 11학급 이하의</u>
	<u>유치원: 2명</u>
	3. 12학급 이상의 유치원: 3명
	<u>이상</u>
<u>②·③</u> (생 략)	<u>③</u> ・ <u>④</u> (현행 제2항 및 제3항
	과 같음)
제21조(교직원의 임무) ① ~ ④	제21조(교직원의 임무) ① ~ ④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⑤ 교무학사전담교사는 학급
	담임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
	있도록 교무학사 업무를 담당
	한다.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